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57
----------	-----

2021. 3. 23.(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16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3월 12일

–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미애 의원)

가. 제안사유

-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육,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일제강점기”, “일제잔재물”, “친일인사”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일제잔재물 발굴과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
 - 충청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일제잔재물의 발굴 등 (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안 제6조)
 -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육,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고자 하는 것임.
-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나 이견이 없었으며, 도지사 의견(문화예술 산업과) 의견으로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조례 제명 등 일부 문구 수정요구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조치를 하였음.
- 이 조례안은 11개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 및 상위법,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됨.

- 그동안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 인적, 물적 역사흔적을 외면하는 실정이었으나 이 조례 제정으로 일제잔재물을 발굴하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과 이것을 국난극복과 애국심 고취의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657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송미애 의원 등 16인
발의연월일	2021년 3월 3일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송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7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송미애,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오영탁, 박상돈
심기보, 연중석, 윤남진
이상정, 이상식, 연철흙
장선배, 이상욱, 허창원
김영주

1. 제정이유

-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세우고 교육,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일제강점기”, “일제잔재물”, “친일인사”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일제잔재물 발굴과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
 - 충청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일제잔재물의 발굴 등 (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안 제6조)
 -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19. 11. 8 . ~ 2019. 11. 27. (19일)
-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세우고 교육,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日帝強占)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
2. “일제잔재물”이란 제1호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충청북도 내 장소나 시설물
 - 나. 친일 인사의 행적과 관련한 기념물
 - 다. 그 밖에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유형의 잔재 등
3. “친일인사”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소속된 인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잔재물 발굴과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제잔재물 발굴 등)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발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물의 발굴·관리
2. 일제잔재물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3.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강제동원 등에 관한 사료·증언 등의 수집·연구·관리·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
4. 일제잔재물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학술 사업
5. 그 밖에 일제잔재물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잔재물의 발굴과 관리, 역사교육 활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일제잔재물의 발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일제잔재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제잔재물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제잔재물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제잔재물의 발굴 및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효율적인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일제잔재물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유적 발굴·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약칭:반민족규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2.>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 의회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